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9월 15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9. 15.(수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9. 14.(화)	담당부서	시험인증정책과
담당과장	정해권 과장(043-870-5480)	담 당 자	김효중 연구사(043-870-5482)

이상훈 국표원장, LED조명 다수인증 지원센터 방역 현장점검

-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매끄러운 다수인증 지원서비스 당부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추석연휴를 앞두고, 15일 **LED조명 제품 다수인증 지원센터**를 운영하고 있는 **한국조명ICT연구원을 방문**해 **방역관리 상황을 점검**하고 관계자들에게 당부와 격려를 전했다.

【 한국조명ICT연구원 방문 개요】

- ㅇ 일시 : **'21. 9. 15(수), 10:30~11:20**
- ㅇ 장소 : 한국조명ICT연구원
- ㅇ 주요내용: ❶방역점검, ❷간담회(기업 애로·건의사항 청취)

* 방역관리 상황점검 취지에 맞게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

□ **LED조명 제품 다수인증 지원센터**는 기업이 LED제품을 출시하는데 필요한 **여러 종류의 인증 취득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**하는 기관이다.

ㅇ **LED조명 제품에 적용되는 7개 인증*** 취득 절차와 시험항목, 인증기준 등을 상담하는 것은 물론, 기업이 여러 인증을 동시에 취득하고자 할 경우, **시간과 비용을 최적화한 기업 맞춤형 시나리오**를 제시하여 **인증 신청과 인증서 발급 등을 지원**하는 역할을 한다.

* (법정강제) 전기안전(KC), 전자파, 효율등급 (법정임의) KS, 고효율, 환경표지, 녹색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□ 국표원은 **LED조명 제품 다수인증에 따른 기업의 부담*을 최소화**하기 위해 **'19년 한국조명ICT 연구원에 LED조명제품 인증 원스톱 창구를 설치**해 시범 서비스를 개시했으며,

* 조명업체의 84%(4,560社)가 10인 이하 영세기업인 반면, LED조명 제품 특성상 모델 종류가 많아 인증 절차와 시간, 비용 등의 기업 애로를 호소

○ 기업이 높은 만족도를 보임에 따라 **'21년부터 다수인증 지원센터 LED 제품군* 전담 창구로 확대**해 운영하고 있다.

* 제품군 체계 확립 및 '19~'20년도 4개 LED 제품에서 '21년도부터 14개 LED 제품으로 지원제품 수 확대

○ 이에 따라, LED조명 제품 다수인증 지원센터에서는 **연간 1백여 건의 다수인증 지원 서비스를 처리**하고 있으며, **연평균 약 4천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센터가 있는 한국조명ICT연구원을 방문**하고 있다.

□ **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**은 이날 **다수인증 지원센터를 방문해 방역관리 현황을 점검**하고,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**기업지원을 위해 성실히 업무에 임하는 센터 관계자들을 격려**했다.

○ 특히, 이상훈 원장은 "중소기업의 인증수요가 높은 **다수인증 지원업무 특성 상, 여러 기업 및 의뢰인과의 접점이 빈번한 만큼 철저한 방역·안전 관리**만이 **자신, 가족 그리고 사회를 지키는 일**"임을 당부하고,

○ "다수인증 지원센터가 **기업하기 좋은 환경**을 만드는 것 뿐 아니라, **안전한 제품**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는 데 자부심을 갖고 **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매끄럽게 업무를 처리**해 달라"고 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김효중 연구사(☎ 043-870-548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1 행사 개요

□ (개요)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방역관리 현황 점검

□ 일 시 : ’21. 9. 15(수) 오전 10시 30분

□ 장 소 : **한국조명ICT연구원**(경기도 부천시 도약로 261)

□ 참석자 ※ 코로나19 상황 고려 참석인원 최소화

○ (정 부) **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**, 정해권 시험인증정책과장

○ (기 관) **한국조명ICT연구원 임기성 원장, 장요한 부원장,** 최서영 본부장, **한국표준협회 김정현 센터장** 등

□ 홍보 메시지

○ 현장방문을 통해 방역·안전관리를 점검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지원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 격려

○ 아울러 현장점검이 방역관리 점검이란 취지에 맞게 참석인원 최소화,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하였음을 명시

□ 세부일정(안) : 총 50분

시 간		내 용	비 고
10:30~10:35	(5`)	▪ **현장점검 취지 및 모두말씀**	국표원장 (B동 204호)
10:35~10:45	(10`)	▪ **다수인증 지원센터 방역관리 현황 설명**	표준협회, 조명연구원 (B동 203호)
10:45~10:55	(10`)	▪ **조명연구원(기업지원교육센터) 방역관리 현장점검, 현장의견 청취**	조명연구원 (B동 205호)
10:55~11:05	(10`)	▪ **조명연구원(기업서비스팀) 방역관리 현장점검, 현장의견 청취**	조명연구원 (A동 403호)
11:05~11:15	(10`)	▪ **조명연구원(시험실) 방역관리 현장점검, 현장의견 청취**	조명연구원 (A동 405호)
11:15~11:20	(5`)	▪ **당부말씀**	국표원장

붙임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(9.6 조정, 중대본)
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단계 명칭	■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	■ 지역 유행/인원 제한	■ 권역 유행/모임 금지	■ 대유행/외출 금지
기준	■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(주간 평균) ▸ 전국: 500명 미만 ▸ 수도권: 250명 미만	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(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) ▸ 전국: 500명 이상 ▸ 수도권: 250명 이상	■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(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) ▸ 전국: 1,000명 이상 ▸ 수도권: 500명 이상	■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(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) ▸ 전국: 2,000명 이상 ▸ 수도권: 1,000명 이상
모임	■ 방역수칙 준수	■ 8명까지 모임 가능 (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)	■ 4명까지 모임 가능 (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)	■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(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)
행사	■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	■ 100인 이상 행사 금지	■ 50인 이상 행사 금지	■ 행사 금지
집회	■ 500인 이상 집회 금지	■ 100인 이상 집회 금지	■ 50인 이상 집회 금지	■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

1그룹 시설
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유흥시설	■ 시설면적 6㎡ 당 1명 (클럽, 나이트 8㎡당 1명)	■ 시설면적 8㎡당 1명(2~3단계) (클럽, 나이트 10㎡당 1명/2~3단계)		■ 집합금지
	■ 운영시간 제한×	■ 24시이후 운영·이용제한	■ 22시이후 운영·이용제한	
	■ (감성주점, 헌팅포차 추가조치)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(1~3단계)			
콜라텍 무도장	■ 시설면적 8㎡ 당 1명	■ 시설면적 10㎡당 1명(2~3단계)		■ 집합금지
	■ 운영시간 제한×	■ 24시이후 운영·이용제한	■ 22시이후 운영·이용제한	
	■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(1~3단계)			
홀덤펍 홀덤게임장	■ 시설면적 6㎡ 당 1명	■ 시설면적 8㎡당 1명 (2~3단계)		■ 집합금지
	■ 운영시간 제한×	■ 24시이후 운영·이용제한	■ 22시이후 운영·이용제한	

2그룹 시설
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식당 카페	■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50㎡이상 시설)(1~4단계)			
	■ 운영시간 제한×	■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	■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	■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
노래 (코인) 연습장	■ 시설면적 6㎡ 당 1명	■ 시설면적 8㎡당 1명(2~4단계)		
	■ 운영시간 제한×	■ 24시이후 운영·이용제한	■ 22시이후 운영·이용제한(3~4단계)	
	■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(1~4단계)			
목욕장업	■ 시설면적 6㎡ 당 1명	■ 시설면적 8㎡당 1명(2~4단계)		
	■ 운영시간 제한×	■ 운영시간 제한×	■ 22시이후 운영·이용제한(3~4단계)	
실내체육 시설	■ 시설면적 6㎡ 당 1명 (체육도장, GX운동 시설은 4㎡당 1명)	■ 시설면적 8㎡당 1명(2~4단계) (체육도장, GX운동 시설은 6㎡당 1명)		
	■ 운영시간 제한×	■ 운영시간 제한×	■ 운영시간 제한× - 수영장은 22시 운영이용제한	■ 22시이후 운영·이용제한
		■ (체육도장) 상대방과 직접	■ (탁구)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	
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		접촉이 일어나는 운동(겨루기, 대련, 시합 등) 제한(권고)	지, 샤워실 운영금지,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■(배드민턴, 테니스, 스쿼시 등)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,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■(실내풋살, 실내농구 등)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,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(예:실내풋살 15명) 초과 금지, 대회금지,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■(GX류) 음악속도 100~120bpm 유지(고강도 유산소 운동→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), 샤워실 운영금지 ■(체육도장)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(겨루기, 대련, 시합 등) 금지, 샤워실 운영금지 ■(피트니스)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안내(고강도 유산소 운동→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) 샤워실 운영금지 ※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	
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	■시설면적 6㎡ 당 1명	■시설면적 8㎡당 1명(2~4단계)		
	■운영시간 제한×	■운영시간 제한×	■22시이후 운영·이용제한(3~4단계)	

3그룹 시설
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학원	■좌석 한 칸 띄우기 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또는 시설면적 4㎡당1명(좌석 없는 경우)	■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㎡당 1명 (좌석 없는 경우)	■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㎡ 당 1명 (좌석 없는 경우)	
	■운영시간 제한×	■운영시간 제한×	■운영시간 제한×	■22시이후 운영·이용제한
	■(관악기, 노래) 노래부르기,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(1~4단계), (기숙형)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(2~4단계)			
영화관 공연장	■좌석 띄우기없음	■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		
		■운영시간 제한×	■(정규공연시설) 기본방역수칙 적용	
			■(정규공연시설 외 공연) 6㎡당 1명+최대 2,000명 이내	■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
	■운영시간 제한×	■운영시간 제한×	■운영시간 제한×	■22시이후 운영·이용제한
	■상영관,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(1~4단계)			
독서실 스터디카페	■좌석 한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(1~4단계)			
	■운영시간 제한×	■운영시간 제한×	■운영시간 제한×	■22시이후 운영·이용제한
결혼식장	■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㎡ 당 1명	■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+ 웨딩홀별 4㎡ 당 1명	■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+ 웨딩홀별 4㎡ 당 1명 *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최대 99명까지 가능	
장례식장	■빈소별 4㎡ 당 1명	■빈소별 100인 미만 + 4㎡당1명	■빈소별 50인 미만 + 4㎡당1명	
놀이공원	■입장인원 제한×	■수용인원의 70%	■수용인원의 50%(3~4단계)	
	■운영시간 제한×	■운영시간 제한×	■운영시간 제한×	■22시이후 운영·이용제한
워터파크	■입장인원 제한×	■수용인원의 50%	■수용인원의 30%(3~4단계)	
	■운영시간 제한×	■운영시간 제한×	■운영시간 제한×	■22시이후 운영·이용제한
오락실	■시설면적 6㎡ 당 1명	■시설면적 8㎡ 당 1명(2~4단계)		
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멀티방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22시이후 운영·이용제한
상점 마트 백화점	▪판촉용 시음,시식,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, 이용자 휴게공간 이용, 집객행사 금지(2~4단계) ▪출입명부 작성·관리(3,000㎡ 이상 대규모점포, 3~4단계)			
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22시이후 운영·이용제한
카지노 (내국인)	▪수용인원의 50%	▪수용인원의 30%(2~4단계)		
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22시이후 운영·이용제한
PC방	▪좌석 띄우기없음	▪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)(2~4단계)		
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22시이후 운영·이용제한
기타 시설				
구분	**1단계**	**2단계**	**3단계**	**4단계**
스포츠경기 (관람)장	▪(실내)수용인원의 50% (실외)수용인원의 70%	▪(실내)수용인원의 30% (실외)수용인원의 50%	▪(실내)수용인원의 20% (실외)수용인원의 30%	▪무관중 경기
	▪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(1~4단계), ▪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(1~3단계)			
경륜·경정 경마장	▪수용인원의 50%	▪수용인원의 30%	▪수용인원의 20%	▪무관중 경기
박물관· 미술관 과학관	▪시설면적 6㎡ 당 1명	▪시설면적 6㎡ 당 1명의 50%	▪시설면적 6㎡ 당 1명의 50%	▪시설면적 6㎡ 당 1명의 30%
실외체육 시설	▪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(3단계) *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(예:풋살15명) 초과금지(4단계 시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) ▪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(1~4단계)			
숙박시설	▪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(직계가족 예외)	▪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(직계가족 예외)	▪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▪전 객실의 3/4운영	▪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▪전 객실의 2/3운영
		▪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(홀대여 제외) (2~4단계)		
파티룸 (공간대여업)	▪시설면적 6㎡ 당 1명	▪시설면적 8㎡ 당 1명 (2~4단계)		
도서관	▪수용인원의 70%	▪수용인원의 50%(2~4단계)		
키즈카페	▪시설면적 4㎡ 당 1명	▪시설면적 6㎡ 당 1명 (2~4단계)		
전시회· 박람회	▪시설면적 4㎡ 당 1명	▪시설면적 6㎡ 당 1명 (2~4단계) ▪사전예약제 운영,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인 이내 (3~4단계)		
마사지· 안마소	▪시설면적 6㎡ 당 1명	▪시설면적 8㎡ 당 1명(2~4단계)		
이미용업	▪시설면적 6㎡ 당 1명	▪시설면적 8㎡ 당 1명(2~4단계)		
국제회의 학술행사	▪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	▪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(2~3단계),		
		▪(학술행사)동선이 분리된 공간마다 49인까지 가능(3단계), 전체 49인까지 가능(4단계) ▪(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) 기본방역수칙 적용(1~4단계)		
종교시설	▪수용인원의 50% (좌석 한 칸 띄우기)	▪수용인원의 30% (좌석 두 칸 띄우기)	▪수용인원의 20% (좌석 네 칸 띄우기)	▪ 수용인원의 10%(최대99명)
	▪모임/행사, 식사, 숙박 자제 * 500인 이상 모임·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	▪모임/행사, 식사, 숙박 금지 * 실외행사 가능(100인 미만)	▪모임/행사, 식사, 숙박 금지 * 실외행사 가능(50인 미만)	▪모임/행사, 식사, 숙박 금지
학교	▪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(1~2단계)		▪밀집도 1/3~2/3 (고등학교 2/3 이내)	▪원격수업
	※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,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(교육부)			

※ 4단계 지역은 식당·카페 및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6인까지 가능, 3단계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8인까지 가능